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377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217827 판결

전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24. 4. 19.

판결선고 2024. 5. 24.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9,437,580원 및 그 중 187,861,260원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3. 7. 16.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1항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22. 6. 25.자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1.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다.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원금	보증기한	지연손해금율
D	C은행	190,000,000	2023. 1. 18.	연 8%

나. 피고 회사는 2023. 1. 18.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사실이 2023. 1. 25. 원고에게 통지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가 2023. 5. 31. C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187,861,260 원(= 원금 185,268,130원 + 이자 2,593,13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의 미수추가보증료는 1,099,390원이며, 원고가 위 보증 관련 지출한 법적절차비 중 미수금은 476,9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해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2022. 6.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와 B 사이의 위 2022. 6. 25.자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으로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869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의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임대인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내용을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피고 회사가 2020. 5. 13. E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반환채권인데, 당초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피고 B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2023. 5. 31.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고, 위 구상금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2022. 1. 18. 이미 체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2023. 1. 18.경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계약시점인 2022. 6. 25.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③ 달리 2022. 6. 25.경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보전채권(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전채권 존재 및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파라

별지